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5,954,821	19,978,645
일반회계	650,455,580	19,513,667
특별회계	15,499,241	464,977
기타특별회계	15,499,241	464,97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02,190	111,066
의료급여특별회계	835,017	25,051
자활기금특별회계	1,451,927	43,558
주택사업특별회계	27,153	81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6,972	2,909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1,319,922	39,598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426,182	162,785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130,748	63,9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7,592	5,328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291,538	8,74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76,93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명시이월 포함)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